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12.29.(금)]

Haustory 하우스토리

※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이 공고문과 관계법령이 상이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2.29.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안성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 전매제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 도면 및 마감재 목록표 등은 주택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안성시 주택과」 – 47130호(2023.12.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9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6층 5개동 총 4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27세대(일반[기관추천] 46세대, 다자녀가구 46세대, 신혼부부 83세대, 노부모부양 12세대, 생애최초 40세대 포함)]
▣ 주차대수 : 총 627대 (아파트 622대, 근린생활시설 5대)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일반공급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세대수
민영주택	2023000681	01	074.7163A	74A	74.7163	23.4254	98.1417	39.8092	137.9509	42.7400	155	15	15	27	4	13	74	81	7
		02	074.7163B	74B	74.7163	23.4254	98.1417	39.8092	137.9509	42.7400	20	2	2	3	0	1	8	12	1
		03	084.9156A	84A	84.9156	26.0468	110.9624	45.2434	156.2059	48.5800	223	22	22	40	6	20	110	113	9
		04	084.9222B	84B	84.9222	27.4532	112.3754	45.2469	157.6224	48.5800	76	7	7	13	2	6	35	41	3
	합 계										474	46	46	83	12	40	227	247	20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74.7163A	074.7163B	084.9156A	084.9222B
견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74A	74B	84A	84B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동호	층구분	해당세대수	분양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5%)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중도금(60%) 1차(15%) 2024-05-31	2차(15%) 2024-07-31	3차(10%) 2024-11-29	4차(10%) 2025-01-31	5차(10%) 2025-03-31	잔금(35%) 입주지정일
74A	155	101동 3,4호 104동 1,2,3,4호 105동 3호	1	1	24,073,915	303,926,085	328,000,000	5,000,000	11,400,000	49,200,000	49,2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114,800,000
			2	7	24,073,915	308,626,085	332,700,000	5,000,000	11,635,000	49,905,000	49,905,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116,445,000
			3	7	24,073,915	313,226,085	337,300,000	5,000,000	11,865,000	50,595,000	50,595,000	33,730,000	33,730,000	33,730,000	118,055,000
			4	7	24,073,915	317,826,085	341,900,000	5,000,000	12,095,000	51,285,000	51,285,000	34,190,000	34,190,000	34,190,000	119,665,000
			5~9층	35	24,073,915	322,426,085	346,500,000	5,000,000	12,325,000	51,975,000	51,975,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121,275,000
			10층이상	98	24,073,915	327,126,085	351,200,000	5,000,000	12,560,000	52,680,000	52,680,000	35,120,000	35,120,000	35,120,000	122,920,000
74B	20	105동 4호	2	1	24,073,915	308,626,085	332,700,000	5,000,000	11,635,000	49,905,000	49,905,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116,445,000
			3	1	24,073,915	313,226,085	337,300,000	5,000,000	11,865,000	50,595,000	50,595,000	33,730,000	33,730,000	33,730,000	118,055,000
			4	1	24,073,915	317,826,085	341,900,000	5,000,000	12,095,000	51,285,000	51,285,000	34,190,000	34,190,000	34,190,000	119,665,000
			5~9층	5	24,073,915	322,426,085	346,500,000	5,000,000	12,325,000	51,975,000	51,975,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121,275,000
			10층이상	12	24,073,915	327,126,085	351,200,000	5,000,000	12,560,000	52,680,000	52,680,000	35,120,000	35,120,000	35,120,000	122,920,000
84A	223	101동 1호 102동 1,2,4호 103호 1,2,4호 105동 1,2호	1	4	27,363,378	343,436,622	370,800,000	5,000,000	13,540,000	55,620,000	55,620,000	37,080,000	37,080,000	37,080,000	129,780,000
			2	9	27,363,378	348,636,622	376,000,000	5,000,000	13,800,000	56,400,000	56,4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131,600,000
			3	9	27,363,378	353,936,622	381,300,000	5,000,000	14,065,000	57,195,000	57,195,000	38,130,000	38,130,000	38,130,000	133,455,000
			4	9	27,363,378	359,136,622	386,500,000	5,000,000	14,325,000	57,975,000	57,975,000	38,650,000	38,650,000	38,650,000	135,275,000
			5~9층	45	27,363,378	364,336,622	391,700,000	5,000,000	14,585,000	58,755,000	58,755,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137,095,000
			10층이상	147	27,363,378	369,636,622	397,000,000	5,000,000	14,850,000	59,550,000	59,55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138,950,000
84B	76	101동 2호 102동 3호 103동 3호	1	1	27,363,378	324,436,622	351,800,000	5,000,000	12,590,000	52,770,000	52,770,000	35,180,000	35,180,000	35,180,000	123,130,000
			2	3	27,363,378	329,336,622	356,700,000	5,000,000	12,835,000	53,505,000	53,505,000	35,670,000	35,670,000	35,670,000	124,845,000
			3	3	27,363,378	334,336,622	361,700,000	5,000,000	13,085,000	54,255,000	54,255,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126,595,000
			4	3	27,363,378	339,236,622	366,600,000	5,000,000	13,330,000	54,990,000	54,990,000	36,660,000	36,660,000	36,660,000	128,310,000
			5~9층	15	27,363,378	344,236,622	371,600,000	5,000,000	13,580,000	55,740,000	55,74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130,060,000
			10층이상	51	27,363,378	349,236,622	376,600,000	5,000,000	13,830,000	56,490,000	56,49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131,810,000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계약시 "1010101홍길동")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KB국민은행	086601-04-163032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공급일정

구 분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2024년 01월 08일(월)	2024년 01월 09일(화)	2024년 01월 10일(수)	2024년 01월 17일(수)	2024년 01월 19일(금) ~ 01월 21일(일)	2024년 01월 30일(화) ~ 02월 01일 (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제출 (10:00 ~ 16:00)	견본주택 방문계약 (10:00 ~ 16:00)
장 소	•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 당첨자(예비당첨자포함) 서류검수 필수 • 구비서류 : 청약 신청 유형별 구비서류 지참	• 견본주택 :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77-3

3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74A	74B	84A	84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	0	3	1	7
	장기복무 제대군인		2	0	3	1	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0	3	1	6
	중소기업 근로자		2	1	4	1	8
	장애인	인천광역시	2	1	3	1	7
		경기도	2	0	3	1	6
		서울특별시	2	0	3	1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성시 / 경기도 거주자우선공급(50%)		8	1	11	4	2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우선공급 낙첨자(50%)		7	1	11	3	22
신혼부부 특별공급			27	3	40	13	8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0	6	2	12
생애최초 특별공급			13	1	20	6	40
합 계			74	8	110	35	227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입니다.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입주선정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인천지방보훈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2호의2(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호(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4호(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5호(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6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자격을 갖춘 경우 청약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청약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의 경우에는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단,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신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이혼 또는 재혼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8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40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합니다.
*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하며,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 전 주택형 60㎡ 초과로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4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9(금)]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경기도,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12개월)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다.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60㎡초과 85㎡이하	▪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자 전원 추첨제(100%) 적용

▣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5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감리회사 현황 / 보증관련 유의사항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리치개발산업	남광토건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1302호(여의도동, 신송센타빌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비122호(영덕동, UTOWER)
법인등록번호	110111-7125720	110111-5759662	110111-0017411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 / VAT별도)

구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도시개발사업 CM형 토목 / 조경	도시개발사업 CM형 전기
회사명	㈜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력키기술단	㈜건일엠이씨	㈜건일엠이씨	㈜간삼건축종합건축사무소	㈜건일엠이씨
감리금액(VAT별도)	1,665,200,000	341,528,840	84,000,000	226,000,000	434,000,000	66,000,000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3-101-0010600호	115,092,575,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월 : 2025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사이버 견본주택 :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 홈페이지(http://안성하우스토리퍼스트시티.com)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77-3번지
▣ 분양문의 : 1533-1121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